

●강릉해양경찰서공고 제2026-7호

강릉해양경찰서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을 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6월 22일

강릉해양경찰서장

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은 수심 편차가 비교적 크고 국지적 와류 및 불규칙한 조류 흐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로 최근 연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지점을 포함한 일부 구역을 출입통제 함으로써 연안사고 및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출입통제 등) 제1항 및 「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」 제8조(출입통제장소 지정) 제1항에 따라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

3. 고시제정(안)

강릉해양경찰서고시 제2026-00호

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(안)
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출입통제 등) 제1항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 고시합니다.

2026년 00월 00일

강릉해양경찰서장

1.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구역

가. 소 재 지: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

나. 지 정 일: 2026. 7. 24.

다. 통제기간: 2026. 8. 16. ~ 지정 해제 시까지

라. 통제시간: 연중, 모든 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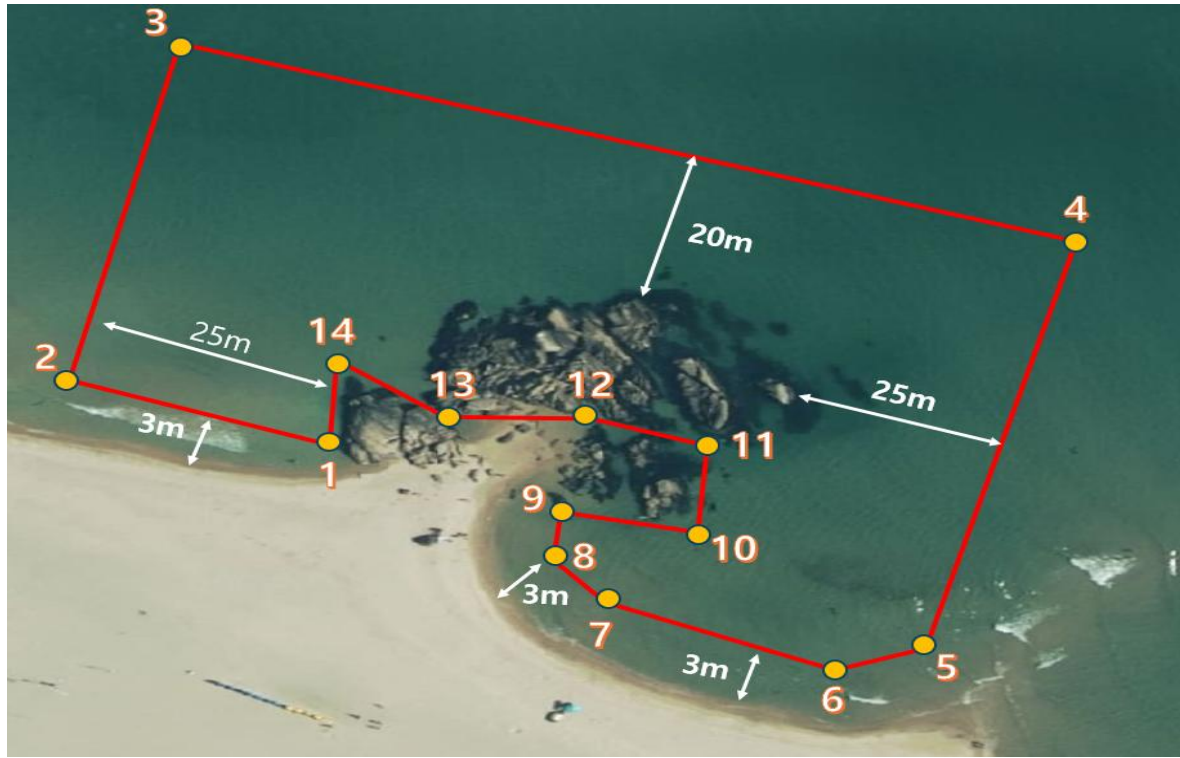
마. 대 상: 모든 활동객

(단, 허가 등을 받은 수상레저사업 관련 부대시설 설치 및 수상레저기구 진출입은 허용)

바. 통제범위: - 표시된 선 내측 구역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북위 38°01'25.77", 동경 128°43'31.26" | 2. 북위 38°01'26.22", 동경 128°43'29.78" |
| 3. 북위 38°01'28.64", 동경 128°43'32.24" | 4. 북위 38°01'26.51", 동경 128°43'35.29" |
| 5. 북위 38°01'24.59", 동경 128°43'33.11" | 6. 북위 38°01'24.71", 동경 128°43'32.81" |
| 7. 북위 38°01'25.07", 동경 128°43'32.57" | 8. 북위 38°01'25.26", 동경 128°43'32.57" |
| 9. 북위 38°01'25.56", 동경 128°43'32.07" | 10. 북위 38°01'25.66", 동경 128°43'33.03" |
| 11. 북위 38°01'25.81", 동경 128°43'33.13" | 12. 북위 38°01'26.02", 동경 128°43'32.59" |
| 13. 북위 38°01'26.02", 동경 128°43'31.79" | 14. 북위 38°01'26.32", 동경 128°43'31.35" |

위 각 호(1~14)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의 구역



2. 참고사항

가. 문의처: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(033-924-2348)

나. 과태료: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자는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다. 예외사유: 허가 등을 받은 수상레저사업 관련 부대시설 설치 및 수상레저기구 진출입은 허용

3. 재검토기한: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4. 의견제출

이 고시 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기관, 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7월 13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(해양안전방제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

찬성·반대 여부	의견 및 수정(안)	사 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연락처

다. 의견 제출방법

- 1) 우편(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, 25492)
- 2) 전화 및 FAX(전화 033-924-2348 / FAX 033-924-2948)
- 3) 전자우편(wjdfo9710@korea.kr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(033-924-234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